

## 기안용지

분류기호	보행 1436-55	전화번호	(전화번호) 12-9441	날짜	1975. 3. 22
처리기간	<i>3월 22일</i>				장
시행일자					<i>3월 22일</i>
보증번호					
보	제 1부 기관 (본관)				장
조	보건식의국장 <i>이기현</i>				장
기	보건대장과장 <i>이기현</i>				장
관					장
기안책임자	위생기관(국립당국)				1975.
경유	79.3.22				통
수신	국립보건대학 <i>공고제</i>				수신
참조					참조
기록	1975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기록
<p>제 1 안 누부 금지</p> <p>1. 조리사에 관한 고등학교 조리 과정에 의하여 1975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합격시킨 자입니다.</p> <p>2. 본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조리학관은 전영기획사에 의하여 실시로 지정합니다.</p>					
<p>첨부 : 1.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서 1부.</p> <p>2. 조리사 자격시험 위원회 구성 1부.</p> <p>3. 공고 (한) 1부.</p> <p>4.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조리학관은 전영기획사에 의하여 실시로 지정합니다.</p> <p>5. 응시요강 1부.</p>					
<p>제 2 안</p> <p>수신 : 보건식의부 장관</p> <p>참조 : 식품 1과장</p>					
0201-1-8A (3) 1969.11.10 수신		1313		190mm x 165mm (한국형 1호) 60g/m <sup>2</sup> 조판 면적 (1,500㎠) 1면 5면	

1. 당시 시행 1972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병행 공고문과 같이 실시되기를 보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풀.

제 3 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동 건

1. 당시 시행 1972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병행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서.도 산하에 주거로록 하여 나수 응시로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2부. 풀.

수신처 : 뉴스-11 (참조 : 보건과장)

내안으로 수합 송양회장, 송파로 식당인협회장, 안국조리사협회장 양 회장.

제 4 안

수신 : 수신처참조

참조 : 위생업소

제목 : 동 건

1. 당시 시행 1972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병행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위생업소 및 관계기관에 주지하여 나수 응시하도록 협조할것.

첨부 : 공고문 각1부. 풀.

수신처 : 시구 1~15.

제 5 안

수신 : 남대문경찰서장

참조 : 경비과장

제목 : 입회 경선관 치관 협조						
1. 당수 시행 1972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은 신수 부지 입회 경선관을 치관으로서 12월 29일 화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1972. 12. 29.						
나. 장소 : 부산광역시						
다. 차출 인원 : 1명. 품.						
제 6 안						
수신 : 한국방송공사사장						
참조 : 방송국장						
제목 : 농 간						
1. 당수 시행 1972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은 농업 공고문과 같 이전까지는 농수정 내금은 농기자재 및 농지에 대한 농업주체로서 당수로 록 의뢰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부 3부. 끝.						
제 7 안						
수신 : 수신처장						
제목 : 조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추천의뢰						
1. 당수 시행 1972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신시함에 있어 과고 교수 중 다음 분야의 전공 교수를 등기시험과 수험족원으로 위촉로서 이하 각별 <명의> 내용 서식을 하기 1972. 12. 29.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추천자 일부						
직업	구분	소속	직위	승명	주소	전화번호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법반상식		1915				

0201-1-43A (2-2)  
1972. 12. 29. 총 일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sup>2</sup>)  
초당 1,000,000매 인쇄)

과목	기본	영어	국어	수학	인문학	체육
교수	김중위상					
첨부 : 공고문 각 1부. 끝.						
<p>수신처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인수대학원장, 총무부원장, 속명여수대학      교총장(참조: 식품영양학과장), 한양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 병설      의약대학원장, 서울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p>						
제 8 안						
수신 : 수신 대상조						
제목 : 실기시험 문제 및 실기시험 재점위원 추천 의뢰						
<p>1. 당시 시행 1975년 제1회 조리사직구시험은 신식함에 따른 다음      분야의 대안학식과 강점인 동부산문을 능 수험 실기시험 문제 출제 및 차점      위원으로 위촉로 적 추천의뢰이오니 과분야별로 다음시식에 의거 1975. 4. 28      까지 추천이이 주시기 바랍니다.</p>						
가. 추천자 명단						
구분	근무처	직위	성명	주소	연락번호	비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첨부 : 공고문 각 1부. 끝.						
<p>수신처 : 속명여수대학원장(참조: 식품영양학과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담당장, 망계대학 가정대학장, 세종대학장, 한국조리사협회      회장, 서울보건전문학교장, 노성여자대학장</p>						
<p>제 9 안 1916</p> <p style="text-align: right;">결재 2021. 3. 21.</p>						

수신 : 동국대학교총장

제목 : 조 토 수 가족식당 학교교실 사용 협조 의뢰

1. 당시 시행 1979년 제1회 조리사 직무시험을 나흘짜리로 같이 실시로 계획  
되었던 조리사 학과 시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기간 : 1979. 4. 29 (일요일)

나. 수험교실수 : 약 2,300명 (36교실)

제 10 안

수신 : [수도운영학관]

제목 : 조리사 직무시험 실시에 따른 교사 사용 협조 의뢰

1. 당시 시행 1979년도 제1회 조리사 직무시험 실시에 따른 신기시험장으로  
직무시험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기간 : 1979. 5. 20 - 27. (양일간)

제 11 안

수신 : 수신처참조

참조 : 위생과장

제목 : 통 건

1. 당시 시행 1979년도 제1회 조리사 직무시험 실시에 따른 감시관을  
차출하시느니 대상작전 명단을 다음 시각에 외기 1979. 4. 29까지 보고하고,

2. 대상작전은 시험당일 09:00까지 시간내수 시험장 본부로 인장 및  
공무원증을 지참 출두하여 관계관의 지시를 받도록 할것.

가. 시험일시 : 1979. 4. 29

나. 장 소 : 종구 편동 5-26 소재 동국대학교

다. 차출 대상 : 구 청위생과 4급이하 경구직 직원

0201-1-43A (2-2)  
1972. 12. 29 송 인

1017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sup>2</sup>)  
총 단 청 (1,000,000매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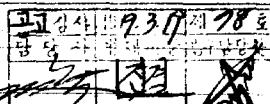
부. 보고서식			
근무 부서	작명	성명	비고
수신처 : 시가 1-13.			
<p>제 12 안 176          수신 : 문화공보관 1979. 3. 21.</p> <p>제목 : 등</p> <p>1. 당시 시행 1975년도 조례식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되오니 보도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리 더주 응시도록 합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유 예산 (공고문 1개수)</p> <p>나. 적용 방법          (신문광고후 청구에 의하여 회계과에서 적용함)</p>			
첨부 : 공고문 1부. 끝.			
<p>제 13 안 177 1979. 3. 21.</p> <p>수신 : 건간등장관 1979. 3. 21.</p> <p>제목 : 등          3. 1979년도 계약부록식 자격시험 (학자) 을 컴퓨터에 의거 책정할 수 있도록 합소인의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서류일자 : 1979. 4. 27</p> <p>나. 책정의뢰일자 : 1979. 5. 1.</p> <p>다. 합격자 발표 : 1979. 5. 15</p> <p>마. 예정인원 : 약 2,500명</p>			
<p>제 14 안 178 1979. 3. 21.</p> <p>수신 : 총무과장 1979. 3. 21.</p> <p>1918 . . . . .</p>			

제목 : 조리사 자격시험 원서 고부 및 접수 장소 협조 의뢰

- 1. 본과에서 시행하는 1975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에 따른 응시원서 고부 및 접수 일부는 당시 우편초소 체인 ~~통로~~에 이오니 협조미이주시기 바랍니다.

- 2. 출석 고부 및 접수 기간 : 1975. 4. 16 - 20 (5일간)

제 15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15

1975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공고

1975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75.

3.

서울특별시 장장상선

1. 원서 배부 및 접수 기간 (공휴일 제외)

1975. 4. 16 - 20. (5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2.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청 후문 (주위설)

3.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 항당자로서 그기관 (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 가. 기숙사, 학교, 병원, 우상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 (군부대 포함)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事한 사실이 있다고 그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 나. 음식점, 유동음식점 (조리사를 두어야 할 업소)에서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事한 사실이 있음을 그시설의 장이 증명하는 자

· 다. 시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강습소에서 3월 이상 조리예관

한 강습을 거수한 사실이 있다고 그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0201-1-43A (2-2)

1972. 12. 29. 총인

1919

190mm x 128mm 일면용지 2면 60g/m<sup>2</sup>

초단정 (.000,000배 인쇄)

3). 고액 분과 고정액 확인하고 또는 4. 공급 기관이거나 박양의료원의 신체  
운동자는 직업 보도시설에서 식품주제에 관하여 학과 90시간 이상 조교신습

900시간 이상의 특성은 이수완족.

#### 4.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 : 학습과정별로 식품위생법관련 일반상식, 음용기방에 관한 기본상식

나. 실기시험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단식, 양식, 인식 증식, 증 빠짐

####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 : 175. 4. 27 (충주 피동 3-26 등록대학)

나. 실기시험 : 175. 5. 26 - 27 (2일간) 수도 요리학원

#### 6. 재출석률

가. 응시원서 1통 (당시소정 양식)

나. 조리집무 증명증정 1통 (응시원서 이전)

다. 사진 5매 ( $20\times30$ cm  $\times 4.0$ ) 5월 이내 활동한 탈모 상반신 반영합판

라. 수수료 2,000원 (식품특별세 수입증거)

마. 응시원서 미연 증거자 강력을 청정하였을 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7. 거점도구

가. 학과시험 : 불편 또는 만년필 (청남색 또는 흑색)

나. 실기시험 : 수도, 화생복, 위생모, 행주

#### 8.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가. 학과 시험 발표 : 175. 9. 10 서성 후정 개시판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175. 6. 2 "

#### 9. 응시자 규칙사항

가. 답안지의 답기지란 답란에 수경 가필 또는 정정한 답은 해당 답만 무효

#### 일. 1

나. 70년도 제1회 학과시험 합격자는 79년도 제1회 학과시험의 문제집으로

접수서 확인을 말이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80

다. 출수된 음식원서 회용서 수수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상식한 수양을 당시 보건행정과에 문의할 것. (72-9441).

제 10 안

4. 1. 1. 남부관

제 10 : 1955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예산 집행 계획

1. 남파역시 시행하는 1955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소요 예산 집행 계획서이 위기 집행로 적어오니 합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 보건비, 보건항상, 보건 ~~위생~~ 위생

1. 예산내역서 (계) 3,366,400원

가. 기초수당 660,000원

• 학과시험 출제수당 10,000원 × 3과목 × 2명 = 60,000원 ✓

• 실기시험 5,000원 × 4과목 × 2명 = 40,000원 ✓

• 관식수당 (학과시험) 3,000원 × 120명 = 360,000원 ✓

• 관식수당 (실기시험) 3,000원 × 30명 × 2명 = 180,000원 ✓

• 편집 및 편찬수당 2,500원 × 10명 × 3일 = 75,000원 ✓

• 재료수당 (실기시험) 50원 × 1,500명 × 2명 = 150,000원 ✓

나. 일반수용비 375,000원 ✓

• 단안자 인쇄 20원 × 2,500매 = 50,000원

• 문재집 인쇄 40원 × 2,500매 = 100,000원 265,000원

• 음식원서 인쇄 10원 × 2,000매 = 20,000원

• 음식료품 인쇄 10원 × 5,000매 = 50,000원

• 합격증 인쇄 10원 × 1,500매 = 15,000원

• 책을 책대 20,000원 × 1회 = 20,000원

• 음료품 대 30,000원 × 1회 = 30,000원

다. 운송비 20,000원

○ 시험기구 및 시험식료 운반비 $14,000\text{원} \times 2\text{대} = 28,000\text{원}$
파. 수수료 수수비 <del>300,000원</del> ✓
○ 전문광고료 <del>1,000원 × 4단 × 40장 = 40,000원</del>
파. 책료비 기타 <del>1,000,000원</del> ✓
○ 시험자료 기자 $1,000\text{원} \times 1,500\text{통} = 1,500,000\text{원}$
파. 임차료 <del>360,000원</del> ✓
○ 출제 및 편집료 $3,000\text{원} \times 2\text{집} \times 3\text{일} = 18,000\text{원}$
○ 학과시험장 $3,000\text{원} \times 50\text{실} = 150,000\text{원}$
○ 실기시험장 $2,000\text{원} \times 20\text{실} \times 2\text{일} = 120,000\text{원}$
○ 실기시험기구 $1,000\text{원} \times 40\text{종} \times 2\text{일} = 80,000\text{원}$
2. 집행방법
가. 지방행정사무관 육우정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입식전도 자금 출납 공무원으로 일정 예산집행하고 이후 정산로 처리.
나. 전도지금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
○ 계좌수당 800,000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1호)
○ 일반수당 <del>500,000원</de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2호)
○ 운송비 20,000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6조 2호)
○ 책료비 기타 1,500,000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6조 3호)
○ 임차료 300,000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6조 5호)
파. 일반수당 비중 각종 인쇄비 200,000원에 대하여는 구·군 종합 밤간설에 인쇄 의뢰로 하고 수수료 수수비 264,000원은 문화공보부설에 공고 의뢰하여 공고 후 청구액 의뢰여 회계국에서 지불도록 한다. 꼬
(별첨) ○ 75년도 계획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계획서
조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시행 75년도 계획 조리사 자격시험은 아래와 같이 실시로 적합.
1. 시험일정 . . . . . 1922 . . . . .



가. 실험실고 공고	199. 3. 25 (목요일) 제 19980
나. 음식원시 접수	199. 4. 16 - 20일 (5일간)
다. 학과시험일시	199. 4. 27 (일요일)
마.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	199. 5. 12 (화요일)
바. 실기시험일시	199. 5. 26 - 27 (2일간)
바. 출증합격자 발표	199. 6. 2 (토요일)
4. 실험장소	
가. 학과시험 장소 : 중구 관동 소재 (동국대학교)	
나. 실기시험 장소 : 수도요리학원	-
5. 실험과목	
가. 학과시험	
1) 식품위생법규	
2)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 상식	
3) 금증 위생에 관한 "	
나. 실기시험	
1) 한식	
2) 양식 4분야 중 선택 1분야	
3) 일식	
4) 중식	
4. 음식자격	
가. 기숙사 박고 봉운고 기박 우승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 (군부 및 관리법포함)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事한 사실이 있거나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나. 조리사를 두어야 할 음식점 또는 후증음식점에서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事한 사실이 있거나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다. 시설 강습소에서 관학 법률에 의하여 승인된 강습소에서 3월 이상 조리	

0201-1-43A (2-2)  
1972. 12. 29. 층 일

190 mm × 268 mm (인쇄 용지 120 g/m<sup>2</sup>)  
조 담 청 (1,000,000매 인쇄)

1923

에 관한 강습을 이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기관의 장이 승인하는지.

박.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국·공립 기관이나 비정부법인의 실무 훈련자는 직업 보도시설에서 식품조리에 관하여 학과 90시간 이상 조리실습 30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단체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 승인이하는자.

## 2. 음식 절차

가. 음식원서 접수 기간 19. 4. 16 - 20 (5일간)

나. 음식원서 접수 장소 서성 후문 (수원점)

다. 계약 수류

### 1) 음식원서 (소정양식) 1부.

2) 조리업무 종사증명 (음식원서 이면) 1부.

3) 사진 2매 ( $3.2^{\text{cm}} \times 4.2^{\text{cm}}$ ) 5개월 이내에 찰랑한 탈모 상반신 반영

## 합판

4) 수구록 (식음료법에 수입증지) 2,000원

5) 음식원서 기재 사항을 결정하였음을 서는 일체 접수처 많음.

## 박. 거점도구

1) 단과식집 : 불판 또는 만년필 (청남색 또는 흑색)

2) 실기식집 : 식도 위생복, 위생토, 행주

## 마. 수험표 교부 및 대조

수험표는 원서 접수시에 교부하고 시험당일 09:30 부터 시험장에서 원서에 접수된 사진과 수험표에 접수된 사진을 대조 확인하고 상위 서에는 평정 조치하여야 하며 수험표는 책상 뒤쪽 상단에 놓기하여 수서 시험 감시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시험도록 한다.

## 바. 시험시간

1) 학과 시험은 시험과목 3과목을 과목당 20분 제로 짜고 (총 3과목 60분 제), 전체 시험시간을 50분으로 한다.

결재  
1924. 4. 21

2) 실험실은 본 약관 번호순으로 실시하되 05:00 부터 실시한다.	
식. 합격수 발표	
4) 필기시험 (학과) 발표	1926. 2. 7.
2) 쟁종 합격자	1926. 6. 2
* 시험후정 개 1판에 그림단(용지 번호도 포함)을 개시 발표한다.	
아. 학과별 고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1926. 6. 13.-16까지 조리사 주관시험 학과별 고부하고 면이증 고부 접차를 안내한다.	
6. 공고 방법	
가. 안간신문 1개사에 1회 공고한다.	
나. 공고안 : 별첨	
7. 세입 예정액	
공고후 응시자 및 합격자 충수에 의기 산출한다. (응시자수 × 2,500원) + (합격자수 × 1,000원) = 세입액	
8. 예산곡목 및 소요 예산 (별첨)	
보건비, 보건향상, 보건예방관리	
9. 기탁수령	
가. 시험문제 답안지, 작성에 있어 수정가필 또는 정정한 답은 해당답만 무효로 처리한다.	
나. 76년도 제3회 조리사 학과시험 합격자는 79년도 제7회 시행 학과시험에 전체적으로 출수 처리에 확인을 받아 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출수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 합격후 결주자유가 발생할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0261-1-43A (2-2)  
1972. 12. 29. 층. 원

1925

190 mm × 268 mm (인쇄 용지 2급 60g/m<sup>2</sup>)  
조 달 청 (1,000,000에 인쇄)

조리사 자격 시험 위원회 구성 (안) 제111회

1. 명칭

서울특별시 조리사 자격시험 위원회로 한다.

2. 위원

- 가. 위원장 1인
- 나. 부위원장 1인
- 다. 간사 1인
- 라. 학과시험인원 (국·영·한) 2인
- 마. 실기시험위원 (분야별) 2인
- 바. 서기 1인
- 사. 감독관 (수집고 실별) <인 이상

3. 구성

- 가.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 나. 부위원장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 다. 간사는 위생과장으로 한다.
- 라. 학과시험 위원 및 실기시험 위원은 다음 각항 해당자 중에서 선정  
위촉한다.
  - 1) 대학교수 또는 요리계 권위자
  - 2) 조리사증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마. 서기는 위생과 직원으로 한다.
- 바. 감독관은 각구 위생과 직원으로 한다.

4. 직무

- 가. 위원장은 시험기간중 시험위원과 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여 학과 및 실기시험의 문제 및 답안의  
선정과 지휘의 책임을 진다.

- 다. 관사는 시험실에 따른 재반준비 및 시험장을 관리하며 시험감독관 및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및 감독을 한다.
- 라. 학과시험 위원은 담당과목의 출제 및 채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채점을 컴퓨터로 처리시 채점책임을 면한다).
- 마. 실기시험 위원은 담당분야의 출제 및 채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바. 시기는 시험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사. 시험감독관은 시험장의 질서유지와 시험당인자 배부 및 수결과 부정 행위자의 적발 및 징장의 책임을 진다.

#### 5. 시험위원 회복

학과 및 실기시험 위원은 병가석식에 의거 위촉이며 기타 관계관은 위촉을 생략한다.

#### 6. 시험출제 방법

- 가. 위촉 받은 학과시험 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 문제 30문제를 출제하되, 문제당 1분 30초 이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출제한다.  
(학과 계약 없음). 단, 30문제 중 20문제는 선형형(4직선부형), 10문제는 진위형(0, x)으로 출제한다.
- 나. 위촉 받은 실기시험 위원은 담당분야에 대한 시험문제당 30분 이내에 유 ~~선택형과 문제당 20문제로 출제하는 경우 1인당 1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로 한다. 단 위촉 위원 1인당 2문제 출제한다.

#### 7. 채점방법

- 가. 필기시험은 과목당 20문제에 배점은 각 5점으로 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고 맞는 답안은 속셈으로 계산하며 블린답의 경우는 없이 당시 컴퓨터에 의거 계점한다. 단, 답안의 기호를 가릴하거나 경경찰서에는 당해답안은 계점하지 아니한다.
- 나. 실기시험은 원생기술 및 해설으로 구분하여 계점하며 각분야를 100점으로 총 배점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채점 위원 2인으로 600점 만점으로 한다.

## 8. 수험 합격 기준

### 가. 학과시험

- 1) 3과목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공중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총점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목당 40점 이상 총득점 100점이상 녹색은 합격으로 하고 10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총득점이 100점 이상 일자라도 각목별로 40점 미만인 과목이 1과목 이하로 있을 경우 각각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 나. 실기시험

- 1) 실기시험 위원회인 1조의 체점 (1인당 300점 체점) 총 6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분야당 60점 이상으로 하여 총득점 36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합격으로 하여 각목 300점 이상일자로 분야별 (위생기술 10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9. 조리사·가과시험 위원회 직인 관리

본 위원회의 일부 관리 접두어에 따른 직인은 기초 과정 2개의 위원장 직인을 사용하도록 관리한다.

## 79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응시요강

### 1. 응시교부 및 접수 기간

1929. 4. 16. ~ 1929. 4. 20. ( 15일간 ) 응시 시기의 한정.

### 2. 응시 접수 장소

가. 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후문 (주제실)

나. 문의처 : " 보건행정과 (12 - 2441)

### 3. 응시자격

가. 조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료기관 (수료) 및 장기 응시하는 조리업종.

1) 가수술, 학교, 병원과 그 밖 후생기관등의 급식사업 또는 공공 기관  
(군 부대 조리장 포함)에서 음식분석 조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설명 있는 그 기관과 장기 응시하는 자.

2) 조리사를 두어야 할 음식점 또는 유통음식점에서 조리업무 애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고 그 직업의 장기 응시하는 자.

3)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강습소에서 3월 이상 조리  
에 관한 강습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기 응시하는 자.  
4) 교육법에 규정에 의한 과교 또는 국·공립 기관이나, 영양학 백인의  
설치운영하는 족업보조시설에서 식품조리에 관한 학과 90시간이나  
상 조리실습 30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자.

### 4. 시험자료

가. 학과시험.

1) 식품위생법규

2)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3) 공중위생에 관한

나. 실기시험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함)

1929.

안식, 양식, 인식, 풍습을 부과

#### 5. 시험일시 및 장소

##### 가. 학과시험

○ 일시 1930. 4. 29 09:30 ~ 11:30

○ 장소 중구 풀동 3-26 동국대학교

##### 나. 실기시험

○ 일시 1930. 5. 30 ~ 6. 2 (2일간) 09:00 부터

○ 장소 수도요리학원 (123 청계사거리 향동사거리)  
{영지마을로}

#### 6. 시험방법

가. 학과시험은 하나고르기 10문제 (선택형)와 가부족기 5문제 (O,X)로  
불행하고 단안이 주정, 가관하거나 정정한 단은 해당답안은 무효로  
한다.

나.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한다.

#### 7. 채용서류

가. 응시원서 1통 (소정양식)

나. 조리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사설강습소에서 3월이상 조리에 관한  
강습 이수자 및 고우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국·공립기관이나  
비정부법인의 실기 운동하는 취업보도 시설에서 실습조리에 관한  
학과 90시간 이상 조리실습 360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시설증명  
(운영이면)

다. 체전 3개월 6월이내 활동한 학교 졸반전 반령합판 3.4cm x 4.5cm  
파. 수수료 2,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거)

마. 응시원서 가족수명은 정정하였을 시는 일체 접수 기 않음.

#### 8. 합격자 발표

가.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 1930. 6. 15 시청후정 개시관

나. 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930. 6. 20

#### 5. 응시자 주의사항

가. 평가수집 응시자는 시험기간 09:00까지 출수 11:20까지 설정된 시수에 차습하여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 시험종 **주**의사항을 청취 출수마지막은 은니.

나. 수험장 접수후의 수험장 일정은 접수 몸이 된다.

다. 지침도구

1) 학과시험 : 불편또는 단편필(록, 선수) 

2) 실기시험 : 수도, 위생복, 위생모, 학수

#### 6. 기타 사항

가. 76년도 제3회 시행 당시 주의사항과 함께하는 175년도 제1회 시행학과수집에 면제되므로 접수처에 확인을 받아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합격수 결정 이유가 밝혀질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